

# 대학장수여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대학장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대학장이란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, 과학, 교육 및 기타 부문에서 인류문화의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 및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한 국내외 사회 저명인사에게 그의 빛나는 업적을 치하하는 뜻에서 수여되는 문화장을 말한다.

제 3 조 (대학장의 종류) 대학장의 종류는 금장과 은장으로 한다.

제 4 조 (대학장의 결정) 대학장 수여의 종류 및 수상자는 대학장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 5 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, 교무처장으로 한다.  
② 위원회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장 수여의 가부 및 종류
2. 대학장 수여의 시기와 장소
3. 기타 대학장 수여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 7 조 (회의소집)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8 조 (의결정족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9 조 (회의결과의 보고)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196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2. 1965년 3월 1일에 제정한 대학장 수여규정은 본 규정이 효력 발생함과 동일자로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